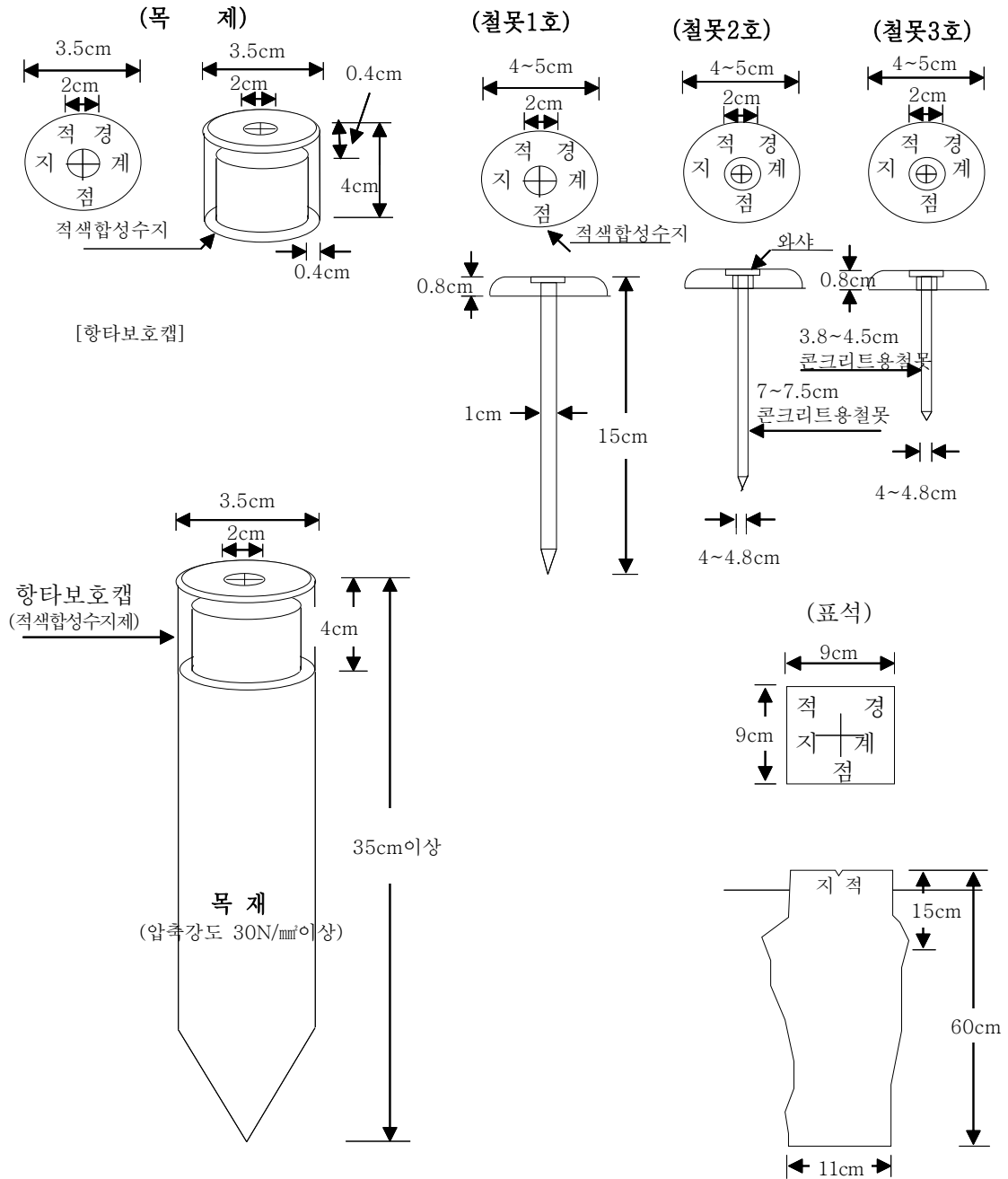


경계점표지의 규격과 재질 (제60조제2항 관련)



비고

1. 목제는 비포장지역에 설치한다.
2. 철판1호는 아스팔트 포장지역에 설치한다.
3. 철판2호는 콘크리트 포장지역에 설치한다.
4. 철판3호는 콘크리트 구조물·담장·벽에 설치한다.
5. 표석은 소유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설치한다.